

의안번호	제611호
의결 연월일	2024년 6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
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6월 10일

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61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6월 10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무분별한 남용 방지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환수, 징계 등의 필요한 제재 조치를 **임의규정**에서 **강행규정**으로 개정하여 실효성 제고

※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(충청북도 감사관-8505호)

2. 주요내용

- 부당사용자 제재 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.(제9조)

3. 규칙안(개정규칙안)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“제출의견 없음”
 - '24. 6. 4.(화) ~ 6. 9.(일) /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회부할 수 있다.”를 “회부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취할 수 있다.”를 “취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환수,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제9조(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) ① ----- ----- ----- 회부하여야 한다. ② ----- ----- ----- 취하여야 한다.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】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업무추진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.
 - 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: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, 의회사무기구의 장,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,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
 - 나.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: 지방의회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
2. “회계관계공무원”이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업무추진비의 집행)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) ①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②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(週)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.

제5조(세부기준 등)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